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7. 18 선고 2022가단14083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3. 6. 20.

판 결 선 고 2023. 7. 18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/5 지분에 관하여 2022. 6. 2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/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/5 지분에 관하여 2022. 6. 29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4,489,6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4. 피고는 원고에게 24,489,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5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D 주식회사의 C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주식회사 E, F 주식회사, G 유한회사, H 유한회사, 주식회사 E, I 유한회사로 순차 양도되었다가 2019. 2. 22. 원고에게 양도되었다.

나. 원고는 2020. 7. 8. C를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2020차전112839 양수금 사건에서 “C는 원고에게 32,371,466원과 그중 5,588,060원에 대하여 2020. 6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”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2020. 7. 29.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, 2022. 9. 5. 기준 위 채권의 원리금은 합계 35,523,769원이다.

다. C의 아버지 J은 2022. 3. 4. 사망하였고, 피고와 C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는데(상속지분은 피고 3/5, C 2/5이다), C는 2022. 6. 29.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통해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였고, 2022. 7. 5.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라.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, 원고에 대해 위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사해행위의 성립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

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, 피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나.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

1)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

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C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)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데, 갑 제9호증의 2의 기재, K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에 의하면, 사해행위 이후인 2022. 8. 2.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8,000,000원, 채무자 피고, 근저당권자 K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, 사해행위 무렵인 2022. 7. 28. 기준 위 부동산의 시가는 61,224,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,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,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부동산의 가액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4,489,600원(= 61,224,000원 × 상속지분 2/5)이 된다.

다. 소결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/5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위 각 부동산 중 2/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, 한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중 2/5 지분에 관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4,489,6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24,489,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태균

[별지]

부동산 목록

1. 대전광역시 서구 전 1435㎡
2. 대전광역시 서구
흙벽돌조 슬래트지붕 단층주택, 밭당 72㎡
3. 대전광역시 서구 임야 13㎡
4. 대전광역시 서구 전 1134㎡ 끝.

